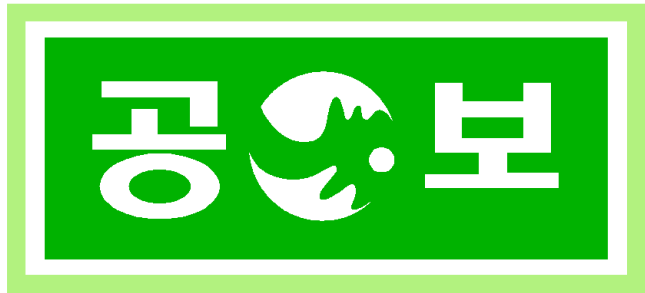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기 관 의 장



제 820 호 2013. 6. 3(월)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84호[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85호[공유수면점·사용허가 고시]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87호[도로명주소 고시]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88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90호[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9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536호[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539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회 관									
--------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84호

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주민참여과)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점용위치	호계천 936-1번지	하 천 명	호계천																				
점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작물(방범용 CCTV) 설치 POLE 1개식(F=6M) 카메라 고정 3대, 회전 1대 	점용면적 (㎡)	구 분	일시	영구																		
			지방하천	-	1㎡																		
점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영 구 	-	2013. 5. 29. ~ 영구																				
하천공사의 명칭	공작물(방범용 CCTV) 설치	하천공사 목적	원지마을 주민쉼터(정자) 설치 공사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공사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용자와 동일 호계천 936-1번지 	공사기간	2013. 5. 29 ~ 2013. 6. 28																				
토지 소재지	<table border="1"> <tr> <td colspan="2">소재지</td> <td rowspan="2">지 번</td> <td rowspan="2">지 목</td> <td colspan="2">편입면적(㎡)</td> <td rowspan="2">소유자</td> </tr> <tr> <td>구,군</td> <td>동,리</td> <td>하천구역</td> <td>소하천구역</td> </tr> <tr> <td>북구</td> <td>호계동</td> <td>936-1번지</td> <td>천</td> <td>1</td> <td>-</td> <td>건설부</td> </tr> </table>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	구,군	동,리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북구	호계동	936-1번지	천	1	-	건설부				
소재지		지 번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														
구,군	동,리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북구	호계동	936-1번지	천	1	-	건설부																	

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13 - 85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협의·승인)	점용목적	비 고
		주 소	성 명					
2013. 5. 28.	2013 - 1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967-1번지 인접 공유수면	6.45㎡	2013.5.28. ~ 2028.5.27.	이동식 화장실 설치	조건부 허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87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15외 2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6. 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신진동 234-5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5(신진동)	2013-06-03	매곡동의 지명을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1-03-22	
2	울산광역시 북구 시래동 589	울산광역시 북구 기동길 100(시래동)	2013-06-03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다.	2004-08-09	
3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73-1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9(호계동)	2013-06-03	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9-08-20	
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73-1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11(호계동)	2013-06-03	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9-08-20	
5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73-1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11-1(호계동)	2013-06-03	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9-08-20	
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73-1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1길 13(호계동)	2013-06-03	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9-08-20	
7	울산광역시 북구 시래동 292-20, 292-22, 292-24	울산광역시 북구 안시레길 30(시래동)	2013-06-03	기존 자연마을인 안시레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38 10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길 7(진장동)	2013-06-03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9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68 6-2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3길 11-1(진장동)	2013-06-03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10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68 6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3길 11-3(진장동)	2013-06-03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1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68 1-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2길 6(진장동)	2013-06-03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12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68 1-5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2길 6-1(진장동)	2013-06-03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1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68 1-4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0길 14-1(진장동)	2013-06-03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14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68 1-3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0길 14(진장동)	2013-06-03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15	울산광역시 북구 신진동 431-12, 431-13, 432-14, 432-15, 432-16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65-1(신진동)	2013-06-03	호계동에 소재하는 도로로 법정동인 호계동의 이름을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1-03-22	중진지번 조정
16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동 44-53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1길 210(대안동)	2013-06-03	예전 지명인 대안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4-08-09	

순번	중점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7	울산광역시 북구 잠곡동 637-7	울산광역시 북구 음달길 29(전곡동)	2013-06-03	2013-06-03	기존 지인마을인 음달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18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초지구 958 7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7길 5-1(진장동)	2013-06-03	2013-06-03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19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초지구 958 7-1L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7길 5(진장동)	2013-06-03	2013-06-03	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2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0-7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20길 10-1(호계동)	2013-06-03	2013-06-03	기존 희망길이 추상명사이므로 도로명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로에 분기하므로 일련번호 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9-08-20	
2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578-7	울산광역시 북구 깃골1길 21-1(호계동)	2013-06-03	2013-06-03	예전 지명인 깃골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 부여하였다.	2009-07-07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3 - 88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진장10길 16외 10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6. 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0길 1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6B 1L	2013-06-03		
2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1길 66-6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654	2013-06-03		
3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1길 66-1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656	2013-06-03		
4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1길 68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657	2013-06-03		
5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1길 70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659	2013-06-03		
6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1길 74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663	2013-06-03		
7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1길 62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643	2013-06-03		
8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1길 73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633-2	2013-06-03		
9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1길 78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666	2013-06-03		
10	울산광역시 북구 산음1길 77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667	2013-06-03		
11	울산광역시 북구 달곡1길 84-5	울산광역시 북구 무룡동 649	2013-06-0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90호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 명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장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93B2L						
점용위치	신천동 745-50	하 천 명	매곡천				
점용목적	매곡천 하천정비 지장전주 이설 ○ 전주 1주 이설(H=16M)	점용면적 (㎡)	구 분	일시	영구		
			지방하천	-	0.196㎡		
점용기간	○ 일 시	-					
	○ 영 구	2013. 5. 31. ~ 영구					
하천공사의 명칭	공작물(전주이설) 설치	하천공사 목적	매곡천 하천정비 지장전주 이설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점용자와 동일	공사기간	2013. 5. 31 ~ 2013. 6. 28				
공사위치	매곡천 745-50번지						
토지 소재지	소재지		지 목	편입면적(㎡)		소유자	
	구,군	동,리		지 번	하천구역		소하천구역
	북구	신천동	745-50번지	천	0.196	-	건설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 5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13. 5. 3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7명

-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대형마트 대표 : 1명
-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SSM 대표 : 1명
-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전통시장 대표 : 1명
-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슈퍼마켓 대표 : 1명
-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소비자 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 대표 : 1명
-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1명
-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 1명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3. 5. 31.(금) ~ 2013. 6. 10.(월) 18:00까지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담당자 박명심(☎ 241-7702)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및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경제일자리과
 - 이메일 : wotks@korea.kr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사진포함) *사진은 전자파일로 제출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4. 선정결과 : 2013. 6. 11.(화) 18:00까지 개별통지

5. 선정기준

- 위원회 여성비율 제고를 위하여 여성 신청자 우선
-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유통업에 관하여 관심이 많고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경제일자리과(박명심 241-7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청서 서식】

울산광역시 복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신청서

성 명		성 별 남(), 여()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전 공)
주 소	울산광역시	
직 장 명 (직 위)		
연 락 처	휴 대 폰 :	자 택 :
E-mail		
주요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신청사유 및 활동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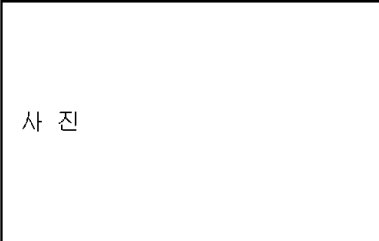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협의회 위원 관리 및 체납세 확인 조회
 - 개인정보 이용 기간 : 임기 만료시까지
-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빈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복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2013. . .

신청인 : (서명)

이 력 서



인 사 항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근 무 처	직 위		
	직장주소			
	자 택 전화번호 (052)	직 장 전화번호 (052)		
학 력	자택주소 (우편번호) -			
	E-mail		휴 대 폰	
	계좌번호 - -		(거래은행 :)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			
주 요 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			
	~			
	~			
기 타 참 고 사항	-			
	-			
	-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3 - 539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3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안행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고,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상황관리 기능강화를 위하여 부서 명칭변경과 분장사무를 추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건설도시국에 두는 과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변경
 - 조정 사유 : 지역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안전총괄부서를 설치하기 위하여 현행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명칭변경
- 나. 안전건설과 분장사무에 안전정책 총괄·조정 업무를 추가
 - 조정 사유 : 안전총괄부서에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상황 관리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장사무 추가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6.7(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참조:기획홍보실장, 전화:052-241-7102, 팩스:052-241-7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획홍보실에 비치하여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복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3호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복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6조 (생략)	제1조~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제1항 건설도시국에는 <u>건설방제과</u> ,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를 둔다.	제7조제1항 건설도시국에는 <u>안전건설과</u> ,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를 둔다.
제7조제2항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행정, 도로의 개선·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안전정책 총괄·조정</u> , 건설행정, 도로의 개선·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2호~제13조 (생략)	제7조제2항제2호~제13조 (현행과 같음)